

[별표 14의2] <신설 2012.1.19>

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(제52조의2제1항 관련)

구 분			내 용	제출시기
자료 수집기 및 측 정 기기	점검	일반 점검	· 측정기기 및 부대장비의 점검 또는 청소 · 측정기기 교정 · 단순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(측정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센서류 및 검출부의 부품은 제외)	사전
		긴급점검	· 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 · 원인규명과 수리	사후
	상태 정보 발생	가동중지 · 점검중	· 원인규명과 수리준비(제작업체에 의뢰)	사후
		통신불량 동작불량	· 수리 · 교환을 위한 부품 수급 · 특정 또는 불특정 원인으로 자동발생	
	자동측정자료의 미수신		· 자료수집기(중간자료수집기) 점검, 전기설비 자체점검, 수전설비 보완공사, 전기안전 점 검 등	사전
기타	정도 검사		· 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	사전
			· 정도검사 기간	
그 외 비정상 자동측정자료로 판단되는 경우(시료펌프 순간 정전 후, 자동교정 후, 기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한 이상 자료 및 비정상 상태정보 등)				사후

비고 : 개선사유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
서 · 모사전송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즉시 한국환경공단
에 제출하여야 한다.